

# 동물권행동 카라

수신자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경유)

제 목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 · 실습 중지 및 생명존중 교육으로의 전환 요청

---

1. 안녕하십니까?

2. (사)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2002년 시작되어, 동물과의 바람직한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 캠페인에 주력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3. 카라는 2021년 3월 22일, 불임2의 자료와 함께 귀사의 교육 프로그램 중 과학탐구 프로그램으로 오징어 해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4. 교육부는 '생명존중교육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7년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해부실험을 제외했으며,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제24조2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에 카라는 불임1과 같은 이유에서 귀사의 해부실험 즉시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5. 아울러 이후 동물의 생태와 복지를 고려한 생명존중 교육으로의 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본 공문과 귀사의 답변 내용은 카라 홈페이지와 보도 자료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6. 4월 7일(수)까지 귀사의 답변을 아래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edu@ekara.org](mailto:edu@ekara.org))

불임1.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실습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한 카라의 의견서. 1부.

불임2. 카라에 제보된 오징어 해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웹 소개 화면. 1부. 끝.

(사) 동물권행동 카라



---

담당	간현임	팀장	간현임	이사	대표	전진경
시행	2103-가A-032		(2021. 03. 29.)	접수		( )

우 03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457-5) / <https://ekara.org>  
전화 02)3482-0999      전송 02)3482-8835 / [info@ekara.org](mailto:info@ekara.org) / 공개

## [붙임1]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실습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한 카라의 의견서

### 이유 1.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보호법 제23조에서는 동물실험이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될 수 없는 사설학원의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은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기존의 해부실험 없이 '지식과 경험'을 보유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23조2항의 원칙에 따라 실제 해부를 시행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사실상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23조의 원칙에 따라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8년 신설된 동물보호법

#####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형·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유 2. 해외 선진국형 국가들의 동물해부실험에 대한 제도 현황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예: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다수의 선진국형 국가들은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동물복지에 대한 배려 뿐 아니라, 해부실습 등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이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백해무익하기에 '비교육적'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 스위스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덴마크 : 중고교 동물 해부실험 법으로 금지
- 대만 :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금지
- 인도 : 대학 동물 해부실험 금지, 해부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
- 영국 :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 금지
- 미국 :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초 · 중 · 고 학생들이 직접적인 동물해부 대신 대체물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이유 3. 카라의 동물해부실험실습 반대 활동

카라는 지난 2016년 6월 경기도 양평군의 K사교육업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돼지 폐, 붕어, 메추라기 등의 해부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동물 해부실험 제재 요청을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사과공문을 받았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해부실험과 생태계 교란 생물 이용 실험 관련 유의사항 알림에 대한 공문을 발송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플리시브릿지'에서 실시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중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공청회'에 참가하여 어린이 · 청소년 동물해부실험 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 함께한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실(대표발의 의원실)에서 2017년 3월 15일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당 법안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3월 15일 ~ 4월 5일 수요일까지 약 3주 간 2,7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1차 제출하고, 4월 24일 세계실험동물의 날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19명의 국회의원실 전원에게 약 5주 간의 서명운동 결과인 3천여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2월 28일 관련 법 개정안이 (대안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사체를 포함하여 동물 해부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카라에서는 생명존중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2015년부터 대체학습 교구로 개구리/쥐 해부모형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교원에듀 빨간펜 센터의 동물해부수업에 대한 제보에 강력히 대응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으로 실질적인 변화 사례](#)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로도 유사 교육현장의 해부 중단을 추동한 바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초중고생 해부실습 대체를 위한 카라의 제안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050>

어린이 · 청소년 동물 해부실험에 대한 제재 요청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525>

어린이청소년 해부실험은 동물학대이자 아동학대이다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7963>

미성년자 해부실험금지 서명 1차 제출 + 무한도전 출연!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8485>

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 서명 국회 농해수위 제출!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8575>

[카라x폴리시브릿지]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9727>

동물해부실습 수업, 꼭 그래야만 했나요? :

<https://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1202>

과학 학습이라는 명분의 해부실습, 정말 필요할까요?

<https://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2597>

[해부실습 대응 사례] 해부실습에 사용되어도 “괜찮은” 동물이 있나요.

<https://ekara.org/activity/use/read/12756>

[보도자료]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전면금지하라

<https://ekara.org/activity/use/read/12943>

[논평] 동물 생명 아닌 학교 행정만 고려된, 미성년자 해부실습 ‘이름만 금지’ 규정 비판한다

<https://ekara.org/activity/use/read/13293>

\*관련 보도 기사\*

아이들에게 동물실험보다는 동물보호교육을(2015.05.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0506100141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05061001411)

돼지 폐 해부하는 아이들... 공공연한 학교 밖 동물 실습(2016.06.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14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141)

"나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습에 반대합니다"(2017.04.19.)

<http://news1.kr/articles/?2971733>

교원 '빨간펜' 동물 해부실습 중단...대체 자재로 변경(2019.03.12.)

<http://news1.kr/articles/?3568782>

#### 4. 최종 의견

- 동물해부실습은 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함. 어린이 청소년은 해당사항 없음
- 해외 선진국형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습은 비교육적이며, 이미 대체 가능한 수단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 입증됨
- 국내 입법기관, 교육기관에서 동물 해부실습의 불필요성을 인정하고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조항 신설)

위와 같은 이유로 카라는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징어\(및 해양생물\) 해부 실험 및 수업을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명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후 동물의 생태와 복지를 고려한 생명존중 교육으로의 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생명감수성이 싹트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동물과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자신의 측은지

심을 외면하는 태도부터 배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사회의 진정한 생명존중 교육을 이끄는 모범현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라는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그날까지,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2] 카라에 제보된 오징어 해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웹 소개 화면

### 찾아가는 해양교실

기간 및 일시 : 2021년 5월 ~ 11월  
 ※ 체험(희망일)은 체험채국림청소년해양센터와 일정 조율 후 변경될 수 있음  
 ▶ 해양활동형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교육(체험)세부내용
① 과학탐구	90분	1. 오징어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 2. 오징어 해부 및 관찰 ※ 과학실(실험대) 및 실험도구(해부용 트레이, 가위, 핀셋 등)필요 ※ 다른 해양생물로 변경될 수 있음
② 해양진로	90분	1. 해양교실의 자란 인지도 조사 2. 보드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직업 이해 3. 실제해양관련 실무자 인터뷰 영상 시청
③ 해양환경	90분	1. 파지크림의 이해 2. 리사이클 사례 및 방법 3. 왁스 타블렛 제작
④ 해양안전	90분	1. lost at sea 미션지를 활용 나의 생존을 테스트 2. 선박의 IMO 심볼의 이해 3. 실제 선박에서 사용하는 안전 물품 실제 체험 및 영상시청

▶ 온라인 활용형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교육(체험)세부내용
⑤ 해양환경 I (해양생태계)	45분	1. 해조류의 다양한 활용 2. 해조류의 일간산성분을 활용한 친환경 액체교를 만들기 진행
⑥ 해양환경 II (해조류 활용)	45분	1. 해양사고 발생 시 생존을 테스트(Lost at sea) 2. 해양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미들법을 영상을 통해서 습득

\* 관련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정 및 프로그램이 조정·변경될 수 있음  
 \* 해양활동형 프로그램 및 온라인 활용형 프로그램 중 택 1  
 장 소 : 각 학교  
 참여대상 및 인원 : 초등학교 ~ 고등학교 1회 80명  
 지원사항 : 체험비 및 재료비 전액  
 신청기한 : 2021. 4. 9(금)까지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members7@korea.kr) 송부  
 \* 다수 학교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지역별 균등 배분 및 심사 후 일정 조정확정 등보  
 문 의 처 : ☎ 054-245-1658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행사가 변경, 취소 될 수 있음

[붙임1]

### 「찾아가는 해양교실」 참가 신청서

학 교 명			
주 소			
희망일시	2021년 __월 __일	프로그램명	
참가인원	총 명(교사 명, 남학생 명, 여학생 명) 인솔교사(안전책임자) - 성명 : _____ 인솔자(폰번호) : _____ - 학교연락처 : _____ 이메일 : _____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찾아가는 해양교실」 참가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소
수집 및 이용목적	찾아가는 해양교실 참가신청
보유 및 이용기간	찾아가는 해양교실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교육 종료일
정보관리 및 제공에 따른 동의인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찾아가는 해양교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 . . .

학 교 명 : \_\_\_\_\_ (직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비고 \* 반드시 학교장 직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소년활동 > 체험활동 소개 中 수산과학 15번 프로그램

[https://nyoc.kywa.or.kr/youth\\_activity/intro01\\_sub03.jsp](https://nyoc.kywa.or.kr/youth_activity/intro01_sub03.jsp)

번호	프로그램명	시간	장소	내용
15	해양생물 해부	40분 / 120분	체험관	해양생물의 외형적 특징을 관찰하고, 해양생물의 내부구조를 해부를 통해 관찰하여 해양생물의 생활사에 따라 내부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16	바다에서 온 그대	120분	체험관	현미경 조작 미션활동을 통해 조작방법을 스스로 이해하고 영덕 앞바다 해양생물을 채집하여 관찰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 대해 이해합니다.

